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2009. 5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9534호, 2009.3.25. 공포, 2009.9.26. 시행) 개정으로 과태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며,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선임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기검사 면제(안 제7조)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 나. 가스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가입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
- 마. 법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2)
- 법 제52조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규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p> <p>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p> <p>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p> <p>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p> <p>〈신 설〉</p> <p>제7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생략)</p> <p>〈신 설〉</p>	<p>제3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①</p> <p>1.</p> <p>2.</p> <p>3.</p> <p>4.</p> <p>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p> <p>제7조 (정기검사의 면제)</p> <p>1.·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 및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방법 등 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준수 의무에 대해</p>



현 행	개정안
<p>제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p>② 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p>	<p>한국가스안전공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 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p> <p>제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_____</p> <p>_____</p> <p>_____</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p>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이외의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의 것으로서 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것 <p>③ _____ 제2항 제1호 _____</p> <p>_____</p>

현 행	개정안
<p>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p> <p>2. (생략)</p> <p>②~⑤ (생략)</p>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p> <p><u>〈 신 설 〉</u></p> <p>②·③ (생략)</p> <p>④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p>	<p>-----</p> <p>-----</p> <p>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① -----</p> <p>-----</p> <p>-----</p> <p>1. <u>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u></p> <p>가. <u>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p> <p>나. <u>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p> <p>2.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⑤ -----</p>



법규 및 정책동향

현행				개정안			
<p>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p> <p>[별 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 관련)</p>				<p>제3항과 제4항에</p> <p>[별 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 관련)</p>			
시설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구분		시설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격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격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생략)	(생략)	----	250킬로그램 초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스용품제조시설	(생략)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비고</p> <p>1.~9. (생략)</p> <p>10. 자동설계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과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뺀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p> <p>11. 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란 법 제 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자동설계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 시설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2.·13.(생략)</p>				<p>비고</p> <p>1.~9. (현행과 같음)</p> <p>10. ----- 특정사용시설의 -----</p> <p>11. ----- -----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초과하는 시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시설 -----</p> <p>12.·13.(현행과 같음)</p>			
<p>[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p>				<p>[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p>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만원	1. _____ _____ 아 니한 액화석유가스 사 업자등	_____	_____
2.~15. (생략)	(생략)	(생략)	2.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법 제52조 제2항제3호	200만원	< 삭제 >	< 삭제 >	< 삭제 >
1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시설로 바꾼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	법 제52조 제2항제4호	200만원	< 삭제 >	< 삭제 >	< 삭제 >
18.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법 제52조 제2항제5호	200만원	18. _____ _____ 변경한 자	_____	_____
19.~25. (생략)	(생략)	(생략)	19.~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법 제52조 제3항	100만원	2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_____	_____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종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2010년 3월 31일까지 제16조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